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도지사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관리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 》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927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제2209927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도지사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관리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안 제26조 등)	2

I. 윤재옥의원 대표발의(제2209927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윤재옥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4. 17.

다. 회 부 일 : 2025. 4. 1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 양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과 관리 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장에게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과 관리 등에 대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등).

3. 검토의견

가. 도지사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관리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안 제26조 등)

현행	개정안
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u>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u>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u>시·도지사</u> 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이어야 한다.	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① ----- ----- ----- <u>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장을 말한다)</u> 또는 <u>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u> -----.
② <u>시·도지사</u> 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u>시·도지사등</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휴업하거	④ -----

현행	개정안
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시·도지사</u>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받은 <u>시·도지사</u>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⑤ <u>시·도지사</u>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⑦ (생략) 제29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양도 등)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시·도지사</u>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 (생략) ② <u>시·도지사</u>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u>시·도지사</u>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 -----<u>시·도지사등</u>----- -----. -----<u>시·도지사등</u>----- -----. ⑤ <u>시·도지사등</u>----- ----- ----- ----- ----- ----- ----- -----. ⑥·⑦ (현행과 같음) 제29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양도 등) ① ----- ----- ----- -----<u>시·도지사등</u>----- -----. 1.·2. (현행과 같음) ② <u>시·도지사등</u>----- ----- ----- -----. ③ <u>시·도지사등</u>이----- ----- ----- ----- -----

현행	개정안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⑤ (생략)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u>시·도지사</u>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9. (생략) ② <u>시·도지사</u>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7. (생략) ③ (생략) ④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u>시·도지사</u>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u>시·도지사</u>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제2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 -----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u>시·도지사</u>등은----- ----- ----- ----- -----. ----- ----- -----. 1. ~ 9. (현행과 같음) ② <u>시·도지사</u>등은----- ----- ----- -----. 1.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시·도지사</u>등에게-----<u>시·도지사</u>등은 ----- ----- -----

현행	개정안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과징금) ① <u>시·도지사는</u> 제31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6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2조(과징금) ① <u>시·도지사등은</u>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u>시·도지사는</u>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3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감독 등) ① ----- <u>시·도지사등은</u>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u>시·도지사는</u>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 <u>시·도지사등은</u> -----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u>시·도지사는</u>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및 공사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 <u>시·도지사등은</u> ----- ----- ----- -----.

현행	개정안
④ (생략)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① ~ ④ (생략) ⑤ 발주청은 제4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 조치를 <u>시·도지사</u>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생략) 제80조의2(제척기간) ① (생략) ② <u>시·도지사</u>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제8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u>시·도지사</u>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u>시·도지사</u>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u>시·도지사등</u>----- -----. ⑥ (현행과 같음) 제80조의2(제척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u>시·도지사등</u>----- ----- ----- -----. ----- ----- ----- ----- -----. 1.·2. (현행과 같음) 제8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 ----- ----- ----- -----<u>시·도지사등</u>----- ----- -----. ② -----<u>시·도지사등</u>----- -----

현행	개정안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협회, 그 밖에 건설기술 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u>시·도지사</u>는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4. (생략) 5. 제8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u>시·도지사가</u> 위탁한 협회,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91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u>시·도지사가</u> 부과·징수한다.	----- ----- ----- ----- -----. 제83조(청문) -----<u>시·도지사</u>등은----- ----- -----.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u>시·도지사등이</u>----- ----- 제91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시·도지사등이</u>----- -----.

개정안은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접수 및 등록 취소, 휴·폐업 신고 접수, 영업 양도 신고 접수, 영업정지 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건설엔지니어링업 관리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현행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1)은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로 구분하면서,

제3조제3항2)에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함”)’에 대하여 각각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14조제1항제2호3)에서는 대도시에 대하여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2)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③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3) 「지방자치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 시·도

-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 나.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 라.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 마.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
- 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2. 시·군 및 자치구

제1호에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98조⁴⁾에서는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인 시(이하 “특례시”라 함)에는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⁵⁾

2025년 1월 행정안전부의 공고⁶⁾에 따르면, 대도시는 총 19개 시⁷⁾로,

4) 「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군·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2. 실질적인 행정수요,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
- ③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 ①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다만,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1.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특례를 발굴하고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 ① 법 제198조제1항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전년도 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한 주민 수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 이상인 시로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 ②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인구의 감소로 전년도 각 분기 말일 현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한 주민 수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시는 그 다음 해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제외된다.
- ③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인구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구 50만”은 “인구 100만”으로 본다.

제125조(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공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2월 1일까지 제11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7) 개정안은 ‘도지사’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관리 권한을 대도시의 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19개 대도시 중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 범위에 있는 전주시는 개정안에 따른 권한 이양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이 중 특례시는 5개, 특례시에 해당하지 않는 대도시는 14개 시이며,

【 대도시 및 대도시별 인구 현황 】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창원
125.8만	111.5만	109.1만	103.4만	102.1만

특례시에 해당하지 않는 대도시(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안산	천안	전주
94.2만	88.1만	82.1만	74.4만	72.0만	69.7만	64.7만
평택	시흥	안양	김해	파주	김포	포항
64.4만	58.8만	56.8만	56.1만	52.9만	51.8만	50.0만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 재구성

현재 대도시에 적용되는 특례 현황으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 포함)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에서 31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함)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이어야 한다.

등에서 22개 특례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 대도시 특례 현황 】

구분	계	사무	조직	재정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31개	27개	3개	1개
100만 이상 특례시 추가 특례	22개	16개	4개	2개
합 계	53개	43개	7개	3개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 대도시에 대한 특례 및 대도시 이양 사무 현황 】

연번	특례 규정 법률 등	특례 및 대도시 이양 사무 ^{하)}
사 무 특 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성과 검사, 측량업 등록 관리 등 사무
2	「공동주택관리법」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및 자격 취소 등 사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 등 사무
4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사무
5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등 사무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사업 등 사무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불량건축물 규정 등 사무
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등 사무
9	「물환경보전법」	수질의 상시측정 및 수질관리조사 등 사무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등 사무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등 사무
1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정비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조례 제정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개발지침 수립의견 제출 등 사무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역진흥산업계획의 수립 등 사무
15	「소음·진동관리법」	공장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설정 사무

연번	특례 규정 법률 등	특례 및 대도시 이양 사무 ⁸⁾
16	「악취방지법」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발생실태조사 등 사무
17	「어촌·어항법」	지방어항 지정 및 지정협의 등 사무
18	「온천법」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등 사무
19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20	「주택법」	대지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등 사무
2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 승인과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사무
22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지구 지정·관리와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2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제출 등 사무
2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소음·진동·빛공해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등 사무
25	「환경영향평가법」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사무
26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연구원 설립
27	「독서문화진흥법」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사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추가 특례		
1	「지방분권균형발전법」	50층 이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허가
2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 발행
3	「지방분권균형발전법」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
4	「지방분권균형발전법」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업무 ※ 경상남도 창원시에만 시범실시
5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요청(도지사 사전협의 要)
6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7	「지방분권균형발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8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
9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10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11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2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물류단지의 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관련 사무

연번	특례 규정 법률 등	특례 및 대도시 이양 사무 ⁸⁾
1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 사무
14	「관광진흥법」	관광특구의 지정 등 사무
15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지방세 체납자 출국 금지 요청 사무
1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육성 관련 지원사무
조 직 특 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1	「지방자치법」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
2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단체장 직급 3급→2급 상향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본청 실·국장 1명을 4급→3·4급으로 임명 가능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추가 특례		
1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일반직, 별정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1명 증원
2	「지방분권균형발전법」	행정기구·정원을 인구, 도시특성, 면적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 가능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실·국장 및 구청장을 3명의 범위에서(120만 이상은 4명) 3·4급으로 임명 가능
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본청 감사·기획·지역경제 등 담당 과장 4.5급 임명, 3·4급 구청장 보좌 4.5급 담당관 임명
재 정 특 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1	「지방재정법」	시·군조정교부금 확보비율 27%→47% 상향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추가 특례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재정투자심사 제외 대상 금액 상향(60억→200억원)
2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지방채발행 기본한도액의 10% 추가 발행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 재구성

8)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는 대도시에 대하여 각각의 법령 등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하나의 특례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각 특례별로 대도시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의 수에 차이가 있음.

최근 대도시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한 입법례로는, 2021년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⁹⁾을 통한 일괄개정 시 400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¹⁰⁾하면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등 사무를 대도시의 장에게 이양¹¹⁾¹²⁾

9)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2.18. 일괄개정, 2021.1.1. 시행)

10) 행정안전부-자치분권위원회 합동 보도자료,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분권의 새로운 길을 열다”, 2020.1.9.

1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2.18. 일괄개정, 2021.1.1. 시행)

제12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17조의3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미술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을 “미술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등록 등) ①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

하는 등 4개 법률¹³⁾에서 27개 사무를 대도시 특례로 규정한 바 있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¹⁴⁾이 2026년 9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 사무를 대도시의 장에게 이양¹⁵⁾하는 내용 등의 환경부 소관 3개 법률¹⁶⁾에 따른 대도시 특례가 추가로 적용될 예정임.

2026년 9월 26일부터 추가로 적용되는 대도시 특례는 2021년 7월

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1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어촌·어항법」

14)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57호, 2025.3.25. 일괄개정, 2026.9.26. 시행 예정)

15)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57호, 2025.3.25. 일괄개정, 2026.9.26. 시행 예정)

제2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후단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로 한다.

법률 제2082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제3항 중 “따라 시·도지사가”를 “따라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이**”로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법률 제20857호, 2025.3.25. 일괄개정, 2026.9.26. 시행 예정)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①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이하 “**환경전문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¹⁷⁾¹⁸⁾가 대도시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사항들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입법화한 것인데,

당시 자치분권위원회는 14개 부처 소관 48개 법률의 개정을 통해

1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6.9. 제정, 2023.7.10. 시행)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 법률]

제44조(자치분권위원회의 설치)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를 둔다.

제4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 2의2.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에 규정된 사항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통합방안·조정에 관한 사항
5.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특례에 관한 사항
6.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7. 읍·면·동의 주민자치기구의 설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읍·면·동의 주민자치 기반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의견의 수렴에 관한 사항
10. 제8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 제정 또는 개정 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11.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사항
12. 그 밖에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18)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430호, 2023.6.9. 제정, 2023.7.10. 시행)의 제정 및 시행으로 ‘지방시대위원회’로 개편되었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63조(기능)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시·도 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부문별 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정책 및 사업,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추진·조사·분석·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제23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관한 사항
7.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육성에 관한 사항
8.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통합방안·조정에 관한 사항
11. 제5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 제72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률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40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26개 사무에 대해 대도시 특례를 규정하기로 하였고,¹⁹⁾

이 중 국토교통부 소관으로는 6개 법률 75개 사무가 대상이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사무 등을 대도시에 이양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음.²⁰⁾

【대도시 특례 규정 심의·의결 사항(「건설기술 진흥법」)】

이양 방향	이양 사무
시·도 → 시·도, <u>50만 이상 대도시</u>	▶ 건설엔지니어링의 등록, 등록증 발급, 휴업·폐업신고 접수 및 등록말소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영업 양도 및 신고, 신고 수리여부 통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명령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 통보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과징금 부과징수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요청 접수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시의 청문
국가, 시·도 → 국가, 시·도, <u>50만 이상 대도시</u>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 출입 검사 권한 ▶ 협회 등에 대한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권한 ▶ 과태료 부과

※자료: 국토교통부

19) 자치분권위원회-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자치분권위,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마련 -법안에 14개 부처소관 48개 법률, 166개 지방이양 및 대도시특례 사무 포함”, 2021.7.26.

20) 국토교통부 제21대국회에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 2114563호, 2022.1.25. 정부 제출, 2024.5.29. 임기만료폐기)”을 제출하여 입법을 추진한 바 있음.

개정안은 대도시 특례에 대하여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등록 등 17개 사무를 대도시의 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규모 및 그에 따른 행정수요 등 특성을 고려하여 사무를 배분함으로써, 대도시 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실적관리 등 측면에서 등록 관청의 지위가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제2항21)에 따라 인구가 2년간 연속하여 50만에 미치지 못하여 대도시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등록 관청 변경 등으로 업계의 혼란이 우려되고,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업무 등은 17개 시·도지사 모두 한국 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위탁²²⁾하고 있어, 대도시의 장에게 권한을 이양하

2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 ① 법 제198조제1항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전년도 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한 주민 수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 이상인 시로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②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인구의 감소로 전년도 각 분기 말일 현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한 주민 수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시는 그 다음 해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제외된다.

③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인구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구 50만”은 “인구 100만”으로 본다.

제125조(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공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2월 1일까지 제11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22) 「건설기술 진흥법」

제8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협회, 그 밖에 건설기술

더라도 실제 업무를 위탁기관이 수행하는 경우 이양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

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업무의 위탁)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1.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2.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주택법」 또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

③ 시·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
 - 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 나.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 다.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 양도·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